협력업체의 공정한 선정(등록)을 위한 실천사항

① 목적

이 실천사항은 회사의 협력업체 선정 및 운용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, 「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」에서 하도급법 위반 행위의 사전예방을 위해 정한 '협력업체 선정 및 운용 실천사항'에 대한 일반적 인 사항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.

② 용어의 정의

- 가. '협력업체'라 함은 회사의 제조, 건설, 용역위탁 거래 등의 대상업체로 예정되거나 거래 중인 사업자로서 하도급법에서 규정하는 수급사업자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수탁 사업자도 포함한다.
- 나. '협력업체 풀(Pool)'이라 함은 회사가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등록하여 관리, 운용하는 협력업체 그룹을 의미한다.
- 다. '협력업체 선정'이라 함은 회사의 협력업체 풀에 등록하는 것을 의미한다.
- 라. '협력업체 운용'이라 함은 회사가 협력업체로 선정, 등록된 업체에 대한 거래개 시 기회 부여, 등록취소 등 협력업체 풀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관리하는 것을 의미 한다.

③ 협력업체 선정 및 운용 실천사항

가. 기본원칙

이 실천사항은 회사의 협력업체 선정 및 협력업체 풀 운용에 대한 자율성, 투명성 및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필요한 최소한의 일반적 사항만을 제시한 것이며,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회사의 '하도급 관리지침'에 따른다.

나. 협력업체 선정 및 운용 실천사항

- (1) 협력업체 선정기준, 절차 및 결과의 공개
 - (¬) 협력업체 선정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협력업체 등록유효기간 만료 30일 전 또는 등록(갱신등록 포함)심사 개시 30일 전에 회사 사내 게시판, 협력업체 포탈 등에 15일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.
 - (ㄴ) 협력업체 선정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는 갱신등록 대상업체에 대하여 45일전에 그 사항을 서면(전자문서 포함 등)으로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.
 - (C) 협력업체 선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서면으로 개별 통지하여야 하며, 미선정업체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서면 통지하고, 개별적으로 통지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협력업체 포탈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.
- (2) 선정기준의 구체성 및 명확성 회사는 협력업체 선정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여 자의적으로 해석할 우려가

없도록 하여야 한다.

- (ㄱ) 협력업체 선정은 서류심사와 방문실태조사로 한다.
- (ㄴ) 협력업체 등록기준은 '하도급 관리지침'에 따른다.
- (ㄷ) 구체적인 심사기준 및 등록 자격은 매년 등록시기에 별도 품의를 통해 확정한다.
- (3) 선정기준 및 절차의 공정성
 - (¬) 협력업체 선정기준은 위탁할 거래내용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, 세부 선정기준별 반영 비중의 배분이 적절하여야 한다.

<정당한 선정기준 및 적용 예시>

- 관련 법규에 의한 해당 전문면허 보유여부
- · 외부 전문평가기관에 의한 대상 업체의 재무건전성 여부
- · 일정 기간 동안의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 위반사실 여부
- 해당 거래와 관련된 기술개발 실적 및 설비보유 여부

<부당한 선정기준 및 적용 예시>

- · 퇴직임직원, 학연, 지연, 친인척 등과 관련 있는 업체인지 여부 등을 선정 기준으로 하는 경우
- · 과거 거래실적 기준에 대한 과도한 배점 등으로 신규 업체의 진입을 방해하는 경우
- 경쟁업체와의 거래 또는 중복 협력업체 등록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경우
- (ㄴ) 협력업체 등록을 위한 신청 및 접수 기간은 15일 이상이어야 한다.
- (C) 회사의 귀책사유로 협력업체 선정에서 제외되었다고 판단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미 선정 통지일로부터 15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.
- (ㄹ) 정당한 이유 없이 기존 등록업체와 신규 등록업체 간의 선정기준에 차별을 두지 않아야 한다.
- (4) 공평한 거래개시 기회 부여

협력업체로 선정, 등록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개시를 위한 입찰 참가기회 등이 제한되거나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.

- (5) 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 및 절차의 공개성
 - 회사는 협력업체 선정기준 및 절차를 공개함과 동시에 등록취소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도 사업장, 전자매체 등에 15일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.
- (6) 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의 구체성 및 명확성
 - 회사는 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여 자의적으로 해석할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.
- (7) 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 및 절차의 공정성
 - (¬) 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은 객관적이고 적절한 사유에 근거하여 설정되어야 한다.

<정당한 등록취소 기준 및 적용 예시>

- · 당해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협력업체의 중대하고 명백한 귀책 사유가 발생한 경우
- 부도, 휴업, 폐업 등으로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한 경우
- ·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경우
- · 관련 법규에 의해 면허가 취소된 경우

<부당한 등록취소 기준 및 적용 예시>

· 원가절감 계획, 납품단가 인하요청 등 회사가 일방적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한 비협조를 이유로 등록 취소하는 경우

- · 경쟁사업자의 협력업체로 중복 등록된 것을 이유로 등록 취소하는 경우
- · 협력업체가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미발주 또는 미위탁함으로써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에 이를 이유로 등록 취소하는 경우(다만, 협력업체가 정당한 거래개시 경쟁에서 탈락함으로써 상당기간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 등 록취소 가능)
- · 협력업체가 협력업체의 임직원 인사에 대한 회사의 지시에 불응함을 이유로 등록 취소하는 경우
- (L) 협력업체 등록을 취소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하고, 해당 사업자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상의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, 회사의 귀책사유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즉시 재등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- (8) 회사는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실천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제재조치(예 : 인사상 불이익 등)를 취하여야 한다.